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홍 백 의

(이화여자대학교)

박 은 주

(이화여자대학교)

박 현 정

(이화여자대학교)

박 진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별거·이혼을 경험한 부부의 결혼지속기간의 추이를 살펴보고,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1998~200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생존표법(life tables)과 비례적 위험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생명표법을 통하여 별거·이혼 추이를 보면 결혼 이후 5년 이내 이혼을 하는 경우가 0.79%, 10년 이내 이혼을 한 경우는 2.12%, 20년 이내 이혼을 한 경우는 5.84%를 나타냈다. 결혼 지속기간은 남편의 연령, 아내의 연령, 아내의 학력, 남편의 월 평균소득, 부모 부양여부, 그리고 연간 가구소득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상태가 열악할수록, 부모부양부담이 있을수록 이혼할 위험이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주제어 : 결혼지속, 노동패널, 생존표법, 위험회귀모형

*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의 BK21 사업 “세계화 시대의 사회복지리더 양성”(과제번호 인06A-1704)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1. 서론

결혼에 대한 전통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던 우리 사회가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1980년 0.6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3.5로 무려 6배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비록 2003년 이후로 다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8). 2007년 기준으로 부부 100쌍당 1.05쌍이 이혼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¹⁾. 이러한 높은 수준의 이혼율로 인하여 이혼으로 발생하는 한부모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경험하는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각종 정책적 노력들이 강구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노력도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2008년 6월에는 이혼숙려제²⁾가 도입되어 이혼결정에 있어 좀 더 시간적 간격을 두고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유할 수 있는 '상담 권고제도'도 신설되었다.

이처럼 현실의 높은 이혼율로 인하여 이혼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기존의 이혼에 대한 연구들은 이혼의 원인이나 결정요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이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주된 관심을 두어,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충격이나 적응, 사회경제적 적응 또는 사회적 인식 등에 초점을 두었다(변화순·김혜영·윤홍식·한지숙, 2006; 김은정·백혜정, 2007; 전신현, 2007; 이현송, 2008).

이혼의 원인이나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주로 개인심리적 요인(천혜정·최혜경·강인, 2006)이나 상호작용적 요인(김영희, 1999; 임성연·김태현, 2002; 현은민, 2007)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미시적 차원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경제적 차원의 요인들이 부부간의 결혼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이혼은 부부간의 심리적 혹은 가족적 요인과 그들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나 경제적 구조의 변화 등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에 의한 가족 내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 증대는 이혼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현·이성희, 1989; 임은혜, 2003; 조은영, 2003; 현경자, 2005; Lee, 2005).

- 1) 1년간 신고된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 유배우 연앙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내는 유배우 이혼률(Divorce Rate of married Persons)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2007년 수치가 5.2인데 반해, 프랑스는 6.3(2005년), 뉴질랜드는 6.0(2006년)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08).
- 2) 이혼숙려제란 협의이혼 신청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 후 다시 이혼 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게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소위 '화김이혼'을 막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과도한 사생활침해라는 논란과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배우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반대 의견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이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횡단면 자료에 기초한 이혼여부는 현재의 결혼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실제로 결혼 후 이혼에 이르게 되는 지속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횡단면 자료의 한계로 인해, 최근 외국의 경우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이혼 여부가 아닌 결혼 지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있다 (South, 2001; Heaton, 2002; Poortman and Kalmijn, 2002; Teachman, 2002; Kalmijn, De Graaf and Poortman, 2004; Andersen, 2005; Poortman, 2005; De Graaf and Kalmijn, 2006). 그러나 아직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는 이혼을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이혼여부만을 분석할 뿐, 결혼 지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이용하여 결혼이 지속되는 추이를 살펴보고, 결혼 지속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결혼지속에 기여하는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결혼 지속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선행연구

이혼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이혼으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과 결혼안정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결혼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을 사용된 종속변수에 따라 세분해 보면 첫째, 이분적 사건으로 이혼여부를 정의한 횡단면적 연구, 둘째, 결혼안정성이라는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연구 그리고 객관적인 결혼 지속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로 대별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첫 번째 부류의 연구들은 횡단면 연구라는 자료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두 번째 부류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결혼안정성은 결혼지속기간과 여러 연구들에서 혼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지속기간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종속변수로 하지만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결혼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결과도 함께 검토하였다.

최근 들어 가족 해체와 관련된 연구의 초점은 이혼 여부, 즉 이혼 가능성보다는 결혼 지속성에 미치는 요인들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중단 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횡단면 자료에 기초한 이혼여부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South, 2001; Heaton, 2002; Poortman and Kalmijn, 2002; Teachman, 2002; Kalmijn et al., 2004; Andersen, 2005; Poortman, 2005; De Graaf and Kalmijn, 2006). 이들 연구들은 남편이나 부인의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자녀 수, 자가주택 소유 여부 등 다양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결혼 지속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가족 해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혼으로 인한 문제점이나 이혼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결혼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개인적, 심리적 요인 및 부부 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종속변수도 사건(event)으로서의 이혼에 초점을 두어(Lee, 2005; Chang and Lee, 2006) 결

혼 지속성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매우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Lee(2005)와 Chang and Lee(2006)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횡단 자료만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안정된 결혼을 종료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Lee(2005)와 Chang and Lee(2006)의 연구는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이혼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으나 종속변수를 이혼 여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결혼 지속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결혼 지속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결혼 안정성과 결혼 불안정성 혹은 이혼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를 함께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성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의 결혼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태현·전길양, 2002; 임은혜, 2003; 조은영, 2003; 현경자, 2007),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조은영, 2003; Lee, 2005; Chang and Lee, 2006). 특히 초혼 연령이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김은경, 1998; Poortman and Kalmijn, 2002; Heaton, 2002; Andersen, 2005; Lee, 2005; De Graaf and Kalmijn, 2006) 어린 나이에 결혼할수록 이혼을 경험할 경향이 크며(김은경, 1998; Poortman and Kalmijn, 2002; Andersen, 2005; Lee, 2005; De Graaf and Kalmijn, 2006) 좀 더 성숙한 나이에 결혼을 할 경우 결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Heaton, 2002). 국내의 경우 역시 부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혼 경향성이 낮았고 특히 초혼 연령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여(김은경, 1998; Lee, 2005), 여성의 초혼 연령이 10대인 경우만이 아니라 20대 초반인 23세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혼 위험률이 증가하였다(Lee, 2005).

또한 부부간의 연령차도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여 부인의 나이가 남편보다 5년 이상 연상일 때에 부부의 나이가 비슷한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혼 위험률이 88%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eachman, 2002).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부부간의 연령차가 클수록 여성이 느끼는 결혼 불안정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세현·이성희, 1989; 김은경, 1998). 이외에 실직한 남성을 대상으로 가족 해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실직한 남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연옥, 2001).

다음으로 결혼 기간 역시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South, 2001; De Graaf and Kalmijn, 2006). 특히 South(2001)에 의하면 결혼 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부인의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미만이라면 이혼 위험률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보다 2배 이상, 대학을 졸업한 것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결혼 기간이 4-9년일 경우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결혼 기간이 10-24년일 경우 부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위험률이 미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 형태와 결혼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가구 규모와 부모 및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대한 것이 포함되는데, 최근 Chang and Lee(2006)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 규모가 부부를 포함하여 네 명에 이를 경우에는 이혼율과의 부적 상관관계가 증가하나 총 가구원 수가 다섯 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혼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부부의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보다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결혼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조은영, 2003; 정은희, 2004) 부양 부모가 있는 경우

에는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가구 구성 형태 중 자녀 수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이혼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Andersen(2005)에 의하면 가족의 경제적 문제와 이혼 사이에서 자녀의 존재가 관계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South(2001)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수와 이혼 위험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결되지는 않으나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여, Poortman and Kalmijn(2002)에 의하면 자녀가 12세 이하일 경우가 자녀가 없거나 13세 이상일 경우보다 이혼 위험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Lee(2005)의 연구에서도 미성년자녀의 수와 이혼 가능성은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성년자녀의 수가 적은 경우보다 자녀의 수가 많을 경우 이혼 시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 구성 형태는 부부의 연령대에 따라서도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랐는데, 35세 이상 54세 미만의 중년기 부부의 경우에는 자녀의 수와 결혼 안정성이 부적 상관에 있어,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결혼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임은혜, 2003). 반면 60세 이상의 노년기 부부에 있어서는 미혼자녀보다는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의 결혼 안정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김태현·전길양, 2002).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결혼 안정성 연구에 있어서 기존의 국내연구는,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교육, 직업, 소득수준으로 개념화하여 점수로 측정된 후 이를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하나로 통합하여 결혼 안정성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결혼 안정성 역시 증가함을 파악하였다(최연실·옥선화, 1987; 김미숙·김명자, 1990).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만을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인식하여 부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고려하지 못하며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중 교육, 직업, 소득 수준이 개별적으로 결혼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 가구 소득과 결혼 안정성에 대한 국내 연구 역시 가구 소득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의 관계를 파악하여, 만족도가 높을 경우 결혼안정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김세현·이성희, 1989). 그러나 이 역시 소득을 직접적으로 조사하기 보다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여 소득과 결혼 안정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최근의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수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교육 수준과 결혼 안정성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여 과거에는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에서 이혼 경향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이혼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De Graaf and Kalmijn, 2006)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전길양, 2002; 임은혜, 2003; Lee, 2005; Chang and Lee, 2006; De Graaf and Kalmijn, 2006). 즉 가구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이거나(Chang and Lee, 2006), 남편이나 부인의 교육수준이 대학 이상일 경우(김세현·이성희, 1989; Lee, 2005) 이혼 위험률이 감소하였다. 또한 이는 노년기의 부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여 중졸 이하보다 대졸 이상의 경우가 결혼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현·전길양, 2002).

한편 성별에 따라서 교육 수준이 이혼 경향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는데, 우선 남편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위험률이 감소한 반면(South, 2001), 부인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위험률이 증가하였으며(Kalmijn et al., 2004) 연구에 따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 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Heaton, 2002). 특히 Teachman(2002)의 연구에 의하면, 이변량 모델에서는 부인의 교육 연한이 1년 증가할 때마다 결혼 해체율이 6%씩 감소하였으나 이와는 반대로 다변량 모델에서는 4-5%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남편의 교육 수준 변수를 통제한 까닭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은 대개 교육 수준이 높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때 남편의 교육 수준이 결혼 해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의 결혼 안정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의 종사상 지위 및 임금 수준과 가구 소득, 주택 보유 및 경제적 문제에 관하여 연구되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종사상 지위와 임금 수준에 관한 연구는 성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 남성의 경우에는 상용직일수록,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최연실·옥선화, 1987; 김미숙·김명자, 1990; South, 2001).

그러나 여성의 고용 형태와 결혼 해체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인의 노동시장 경험이 결혼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현·이성희, 1989; 임은혜, 2003; 조은영, 2003; 현경자, 2005; South, 2001; Poortman and Kalmijn, 2002; Kalmijn et al., 2004; Lee, 2005; Poortman, 2005). 즉 비취업의 여성보다 취업을 한 여성의 경우가 결혼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김세현·이성희, 1989; 임은혜, 2003; 조은영, 2003; 현경자, 2005; Lee, 2005) 여성이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이혼 위험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전일제일 경우에는 이혼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Kalmijn et al., 2004; Poortman, 2005). 여성의 근무 시간과 이혼 위험률의 관계는 부부의 결혼 기간과 결혼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1943-70년에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부인의 근무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혼 위험률 역시 증가하였으며(Poortman and Kalmijn, 2002), 결혼 기간이 10-24년일 경우에도 부인의 근무 시간이 이혼 위험률을 증가시켰다(South, 2001). 특히 Lee(2005)에 의한 국내연구에 있어서는 여성이 임금근로자일 경우뿐만 아니라 구직 중에 있을 경우에도 이혼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에도 이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 소득과 결혼 안정성에 대한 연구는 이 둘이 정적 상관에 있음을 보여주었다(조은영, 2003). 또한 최근, 가구 소득과 이혼 가능성에 대하여 가구 소득을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은 이혼 가능성을 증가시켰으나 총 가구 소득의 경우에는 이혼 가능성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사회보험이나 이전 소득 등이 포함된 까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Chang and Lee, 2006).

또한 가구의 경제적 특성 중 주거 형태에 관해서는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혼 위험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South, 2001; Lee, 2005). 이외에 가구의 경제적 문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해당 가구의 경제적 문제와 이혼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Andersen, 2005; Chang and Lee, 2006). 특히 통념적으로는 국내의 경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계 부채의 증가가 이혼을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노동패널 6차 자료를 이용한 Chang and Lee(2006)에 의하면 가계부채와 이혼을 증가가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가

계 부채 외에 교육 수준, 노동시장 지위, 가구 소득, 응답자의 과소가입 및 가구별 특성 등의 변수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가계 부채만으로 이혼율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으로 결혼 지속성에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기존의 연구는 주로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한 결혼 안정성이나 불안정성을 통해 결혼 지속성을 연구하거나 종단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이혼 사건의 발생이라는 제한된 측면만을 통해 결혼 지속성을 연구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척도나 이혼 여부가 아닌 기혼자의 실질적인 결혼 지속기간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결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10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 구성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본 연구가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의 누적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한 자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패널의 가구자료와 개인자료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가구번호를 기준으로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초혼을 기준으로 패널조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결혼생활을 유지하였거나 혹은 패널조사가 진행된 시점 이후 처음으로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부부 중에서 패널조사가 진행 중인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경우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외 결혼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한 경우는 중도절단(censored)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부부의 경우 그 직전 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계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의 경우 10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2,397쌍으로, 이중 별거나 이혼한 부부는 179쌍, 결혼을 유지한 부부는 2,218쌍이었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을 위해서는 남편이나 부인이 가구주인 경우만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가구주 부부 이외의 경우 가구와 관련된 변수의 사용에 있어 제한점이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나 부채의 경우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는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부부의 결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별거·이혼 발생 여부와 결혼지속기간으로 하였다. 별거·이혼 여부를 나타내는 이분변수는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별거나 이혼의 발생여부로 측정하였다. 결혼지속기간은 별거·이혼 년도에서 결혼년도를 빼서 계산하였으며 년 단위로 측정하였다. 다만 10차 년도까지 별거나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차 년도에서 결혼년도를 빼서 결혼지속기간을 계산하였으며, 중도절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2) 독립변수

결혼 지속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는 남편·아내 각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학력, 취업형태, 월소득), 남편·아내 각각의 심리적 특성(전반적 생활만족도), 가구구성 특성(부모부양여부, 미성년자녀유무), 가구의 경제적 특성(가구소득, 부채, 자가주택유무, 경제상태)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은 남편과 아내의 개인자료를 활용하였다. 연령의 경우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부부는 별거나 이혼을 경험한 직전 년도를 기준으로 한 나이를 사용하였으며, 결혼을 지속한 부부는 10차년도 시기를 기준으로 한 나이를 사용하였다. 학력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여,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월소득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임금,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소득으로 하였으며 미취업자의 경우에는 0원으로 코딩하였다.

부부의 심리적 특성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제시하였는데, 원래 코딩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나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가장 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가구의 구성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부모부양여부, 미성년자녀유무를 고려하였으며, 두 가지 모두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부모부양여부는 부양하지 않음을, 미성년자녀유무는 미성년자녀가 없음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

가구의 경제적 특성으로는 가구소득, 부채, 자가주택 소유여부, 경제상태로 구성하였다. 우선 가구 총소득은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을 합산한 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가구총소득을 나누어준 조정된 가구소득을 사용하였다.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한정하여 합산하였다. 자가주택여부는 자가주택이 없음을 기준범주로 설정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경제상태는 전반적인 가계경제상황을 묻는 질문으로 경제상태가 어려울수록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분	변수	정의 및 측정
종속변수	별거, 이혼	1=별거나 이혼; 0=결혼지속
	결혼지속기간	년 단위
인구사회학적 특성	(남편·아내)연령	별거나 이혼당시 연령
	(남편·아내)학력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이상 (기준범주는 고등학교)
	(남편·아내)취업형태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기준범주는 임금근로자)
	(남편·아내)월소득	만원 단위
심리적 특성	(남편·아내)생활만족도	수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
가구 구성원 특성	부모부양여부	1=부모부양함; 0=부모부양안함
	미성년자녀유무	1=미성년자녀있음; 0=미성년자녀없음
경제적 특성	연간 가구소득	가구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을 합산하여 가구균등화지수로 나누어줌. 만원 단위
	부채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합산함. 만원 단위
	자가주택	1=자가주택있음; 0=자가주택없음
	경제상태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상태가 어려움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건(event)의 발생여부와 사건발생의 시점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적용하는 통계방법인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우선 1999년 이후 별거·이혼 추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명표법(life tables)을 이용하였다. 생명표법은 결혼지속기간에 대한 단순통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별거·이혼 여부는 연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1999~2007년 사이에 별거·이혼이 발생한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1999~2007년 동안 별거·이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중도절단(censored)된 것으로 본다. 또한 생존함수를 이용하여 남편과 아내의 출생년도, 학력에 따른 별거·이혼율의 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례적 위험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이는 생명표법과는 달리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별 변수들이 결혼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 유용한 방법이다. 비례적 위험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위험이 발생한 정도, 여기서는 결혼지속기간이 된다.

4. 연구결과

1) 기술적 분석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가구구성 특성,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2>에서 <표 4>에 걸쳐 제시하였다. 우선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연령, 학력, 취업형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 중 남편의 연령은 39세 이하 43.58%, 40~49세 35.20%, 50~59세 15.08%, 60세 이상 6.15%인데 반해, 결혼을 지속한 부부 중 남편의 연령은 각각 19.93%, 28.72%, 24.44%, 26.92%로, 별거나 이혼이 남편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 더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 중 아내의 연령은 39세 이하 55.87%, 40~49세 34.08%, 50~59세 7.26%, 60세 이상 2.79%인데 반해, 결혼을 지속한 부부 중 아내의 연령은 각각 27.68%, 30.61%, 21.91%, 19.79%로 나타났으며, 특히 별거나 이혼을 한 아내의 절반 이상이 40세 미만에서 나타난 반면, 고연령으로 갈수록 별거나 이혼을 한 경우는 드물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대체로 남편과 아내 모두 학력이 높은 경우가 결혼지속을 하는 경우가 대체로 더 많음을 알 수 있는데,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 중 남편의 학력은 중학교 이하 25.90%, 고등학교 53.61%, 대학 이상 20.48%인 반면, 결혼을 지속한 부부 중 남편의 학력은 각각 28.99%, 38.88%, 32.13%로 나타났다. 아내의 학력도 별거나 이혼을 한 경우 중학교 이하 31.10%, 고등학교 56.71%, 대학 이상 12.20%인 반면, 결혼을 지속한 경우는 각각 39.93%, 39.34%, 20.73%로 나타났다. 취업형태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별거나 이혼을 한 경우가 결혼을 지속한 경우보다 해당 전체 비율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낮으나 미취업자의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별거나 이혼을 한 경우 전체 중 남편의 미취업 비율은 30.17%, 아내의 미취업 비율은 46.93%인데 반해, 결혼을 지속하는 경우 남편의 미취업 비율은 21.15%, 아내의 미취업 비율은 54.15%를 나타내고 있다. 즉 남편은 별거나 이혼을 한 경우가 결혼을 지속한 경우보다 미취업비율이 높고, 반면 아내는 별거나 이혼을 한 경우가 결혼을 지속한 경우보다 미취업비율이 더 낮게 나타나, 별거나 이혼에 있어 여성의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월 평균소득의 경우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가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별거나 이혼을 한 남편의 월 평균소득은 105.70만원, 결혼을 지속하는 남편은 204.46만원이었으며, 별거나 이혼을 한 아내의 월 평균소득은 49.46만원, 결혼을 지속한 아내의 월평균 소득은 55.46만원이었다. 이를 보면 별거나 이혼을 한 아내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결혼을 지속한 경우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소득은 더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분석대상자의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생활만족도의 경우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가 결혼을 지속한 부부보다 생활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별거나 이혼을 한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2.82, 결혼을 지속하는 남편의 생활만족도는 3.36이었으며, 별거나 이혼을 한 아내의 생활만족도는 2.79, 결혼을 지속하는 아내의 생활만족도는 3.34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심리적 특성

변수	별거나 이혼(N=179)		결혼지속(N=2,218)		chisq/ t-test
	남편	아내	남편	아내	
연령					
39세 이하	43.58	55.87	19.93	27.68	$\chi^2=79.350^{***}$ (남편)
40~49세	35.20	34.08	28.72	30.61	$\chi^2=87.726^{***}$ (아내)
50~59세	15.08	7.26	24.44	21.91	
60세 이상	6.15	2.79	26.92	19.79	
학력					
중학교이하	25.90	31.10	28.99	39.93	$\chi^2=15.596^{***}$ (남편)
고등학교	53.61	56.71	38.88	39.34	$\chi^2=19.913^{***}$ (아내)
대학이상	20.48	12.20	32.13	20.73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51.40	39.66	48.33	25.56	$\chi^2=14.670^{***}$ (남편)
비임금근로자	18.44	13.41	30.52	20.29	$\chi^2=17.950^{***}$ (아내)
미취업자	30.17	46.93	21.15	54.15	
월평균소득	105.70(103.46)	49.69(62.52)	204.46(243.82)	55.46(103.33)	t=5.29***(남편) t=0.72(아내)
생활만족도	2.82(0.75)	2.79(0.65)	3.36(0.62)	3.34(0.64)	t=10.66***(남편) t=10.36***(아내)

부부를 둘러싼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구성원의 특성인 부부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부모동거여부에 있어서는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는 11.73%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반면, 결혼을 지속한 부부는 6.72%를 나타내고 있어,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의 부모 동거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미성년자녀유무에 있어서는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가 60.57%, 결혼을 지속한 부부가 47.88%를 나타내고 있어,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의 경우가 미성년자녀가 있을 확률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미성년자녀유무가 직접적으로 별거나 이혼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가 결혼을 지속하는 경우보다 연령대가 더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분석가구의 가구구성원 특성

변수	별거나 이혼(N=179)	결혼지속(N=2,218)	chisq
부모동거여부			
동거	11.73	6.72	$\chi^2=6.320^*$
동거하지 않음	88.27	93.28	
미성년자녀유무			
있음	60.57	47.88	$\chi^2=10.455^{**}$
없음	39.43	52.12	

부부가 속한 가구의 경제적 특성은 자가주택유무, 연간 가구소득, 부채, 주관적 경제상태 등으로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우선 자가주택유무에 있어서는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가 주택을 소유한 비율은 41.57%인데 반해 결혼을 지속한 부부의 경우 70.74%로, 결혼을 지속한 부부에서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간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앞서 제시한 남편·아내의 월 평균소득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의 연간 가구소득은 902.87만원, 결혼을 지속한 부부는 2,031.10만원으로, 결혼을 지속한 부부의 가구소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만큼 부채도 많았는데,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의 부채규모가 1,400.73만원인데 반해 결혼을 지속한 부부는 2,913.80만원이었다. 이를 반영한 결과인지, 가계의 주관적 경제상태를 측정하는 질문에서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의 응답이 결혼을 지속한 부부의 응답보다 낮게 나와, 오히려 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결혼을 지속한 부부가 가계 경제상태를 더 어렵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분석가구의 경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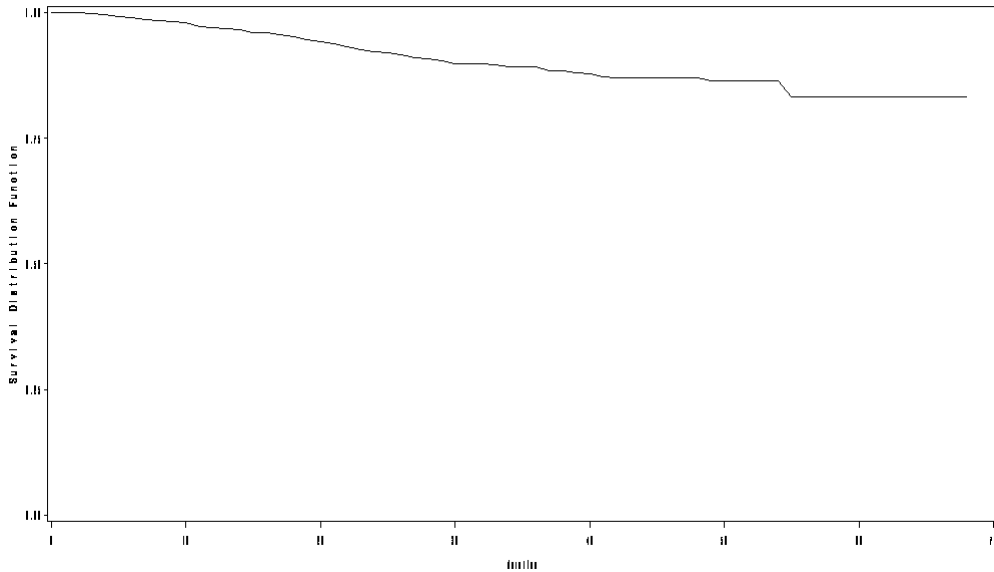
변수	별거나 이혼(N=179)	결혼지속(N=2,218)	chisq/t-test
자가주택유무			
있음	41.57	70.74	$\chi^2=65.043^{***}$
없음	58.43	29.26	
연간 가구소득	902.87(841.63)	2,031.10(2350.51)	t=6.39***
부채	1,400.73(2426.64)	2,913.80(8779.73)	t=2.30*
경제상태	3.30(1.46)	3.45(0.81)	t=2.14*

2) 생명표법 분석

본 장에서는 1999년 이후 별거·이혼 추이를 생명표법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99~2007년까지 9년 동안 별거·이혼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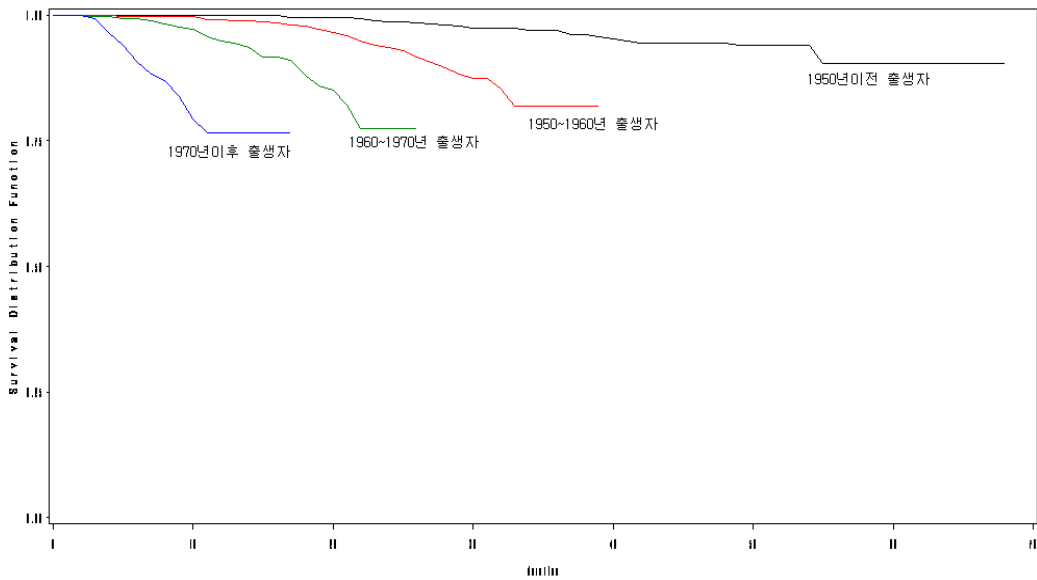
〈그림 1〉은 별거·이혼에 따른 생존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분석대상 2,397쌍 중 별거·이혼을 한

부부는 179쌍으로, 나머지 2,218쌍이 중도절단(censored)되어 절단율이 92.53%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의 생존함수를 보면 결혼 이후 5년 이내 별거·이혼을 하는 경우가 0.79%, 결혼 이후 10년 이내 별거·이혼을 한 경우는 2.12%, 결혼 이후 20년 이내 별거·이혼을 한 경우는 5.84%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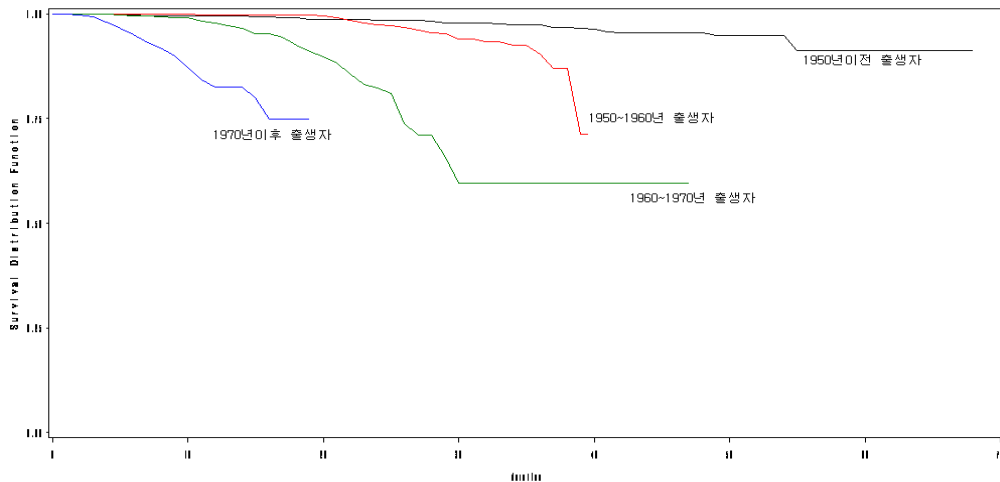
<그림 1> 별거·이혼에 따른 생존함수 (N=2,397)

<그림 2>와 <그림 3>은 남편과 아내의 출생년도에 따라 결혼지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생존함수이다. 출생년도를 1950년, 1960년, 1970년을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출생자의 별거·이혼에 대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남편의 경우 1950년 이전 출생자는 20년 이내 별거·이혼한 경우가 0.54%, 1960년 이전 출생자는 5년 이내 0.16%, 10년 이내 0.32%, 20년 이내 3.53%, 1970년 이전 출생자는 5년 이내 0.59%, 10년 이내 2.82%, 20년 이내 14.86%, 1970년 이후 출생자는 5년 이내 5.98%, 10년 이내 20.64%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아내의 경우 1950년 이전 출생자는 5년 이내 별거·이혼한 경우가 0.36%, 10년 이내 0.54%, 20년 이내 1.27%, 1960년 이전 출생자는 20년 이내 0.52%, 1970년 이전 출생자는 5년 이내 0.27%, 10년 이내 0.83%, 20년 이내 10.26%, 1970년 이후 출생자는 5년 이내 3.38%, 10년 이내 12.79%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보면 남편의 경우는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지속기간도 짧고 별거·이혼할 확률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내의 경우는 비슷한 경향을 띄고 있지만 유독 1960년대 출생한 경우 별거·이혼할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추후 연구를 통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출생년도별로 별거·이혼배율의 격차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01$).



log-rank chi-square=294.3338, p<.0001

〈그림 2〉 남편의 연령별 별거·이혼에 따른 생존함수(N=2,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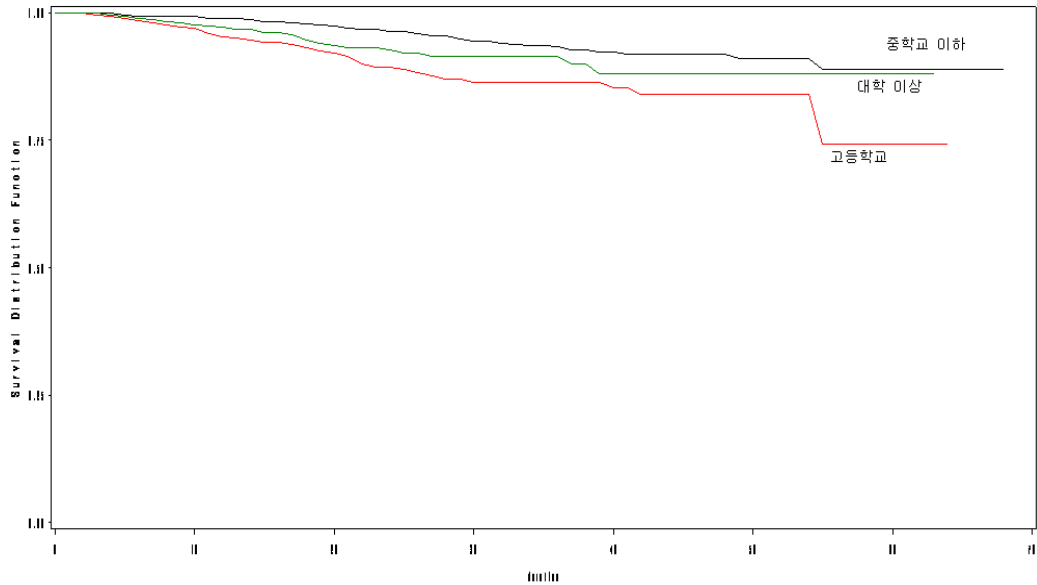


log-rank chi-square=293.9924, p<.0001

〈그림 3〉 아내의 연령별 별거·이혼에 따른 생존함수(N=2,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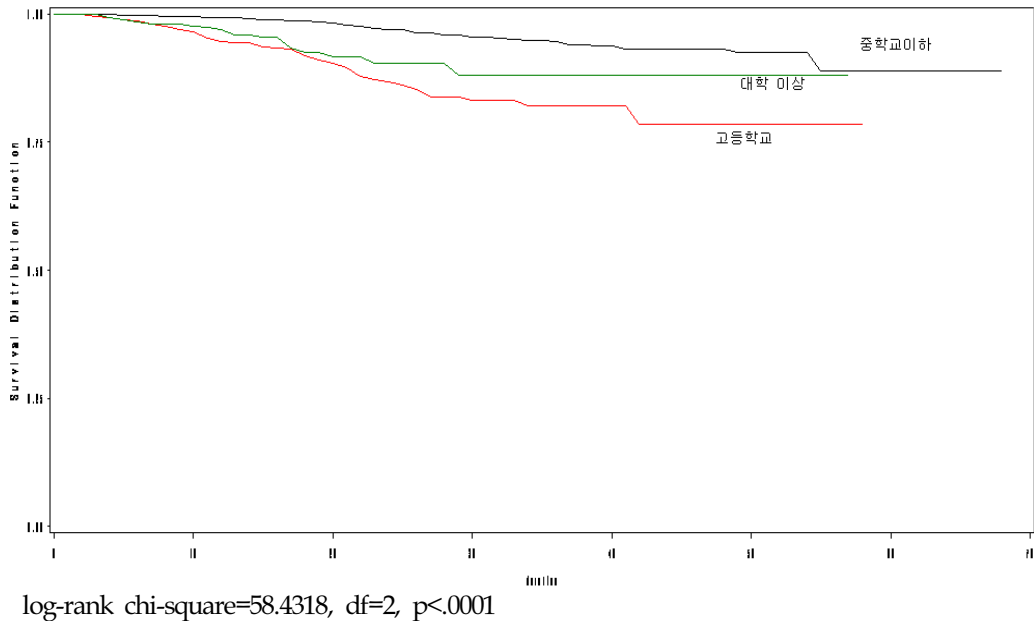
〈그림 4〉와 〈그림 5〉는 남편과 아내의 학력에 따른 층화방법을 통해 별거·이혼에 대한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학력은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별거·이혼에 대한

확률은 남편과 아내 모두 3개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 < .001$). 우선 남편의 학력별 별거·이혼 추이를 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5년 이내 별거·이혼하는 경우 0.45%, 10년 이내 0.75%, 20년 이내 2.62%인데 반해,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경우 5년 이내 1.09%, 10년 이내 3.07%, 20년 이내 8.00%였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5년 이내 0.77%, 10년 이내 2.43%, 20년 이내 6.42%로 나타났다. 아내의 학력별 별거·이혼 추이를 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5년 이내 별거·이혼하는 경우 0.22%, 10년 이내 0.43%, 20년 이내 1.76%인데 반해,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경우 5년 이내 1.08%, 10년 이내 3.53%, 20년 이내 9.66%였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5년 이내 1.01%, 10년 이내 2.29%, 20년 이내 8.3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경우가 다른 학력을 가진 경우에 비해 결혼지속기간이 더 짧고 별거·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학력에 비해 더 많이 배우거나 더 적게 배우는 경우가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log-rank chi-square=21.4597, df=2, $p < .0001$

〈그림 4〉 남편의 학력별 별거·이혼에 따른 생존함수 (N=2,397)



〈그림 5〉 아내의 학력별 별거·이혼에 따른 생존함수 (N=2,397)

3) 비례적 위험회귀모형 분석결과

결혼지속기간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별거·이혼에 대한 비례적 위험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총 2,397쌍 중 모든 독립변수의 정보를 갖고 있는 1,976쌍이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이중 별거·이혼이 발생한 부부는 133쌍, 결혼이 지속된 부부는 1,843쌍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우선 별거·이혼에 따른 비례적 위험회귀모형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을 보면 남편의 연령, 아내의 연령, 아내의 학력, 남편의 월 평균소득, 부모 부양여부, 그리고 연간 가구소득이 결혼지속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남편의 연령과 아내의 연령이 높을수록 별거·이혼 위험배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별거·이혼 위험배율이 17.4% 낮게 나타났으며($p<.001$), 아내의 경우 별거·이혼 위험배율이 19.5% 낮게 나타났다($p<.001$).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조은영, 2003; Lee, 2005; Chang and Lee, 2006)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력에 있어서는 남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지 못했으며($p<.05$), 아내의 경우 고등학교 학력에 비하여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별거·이혼 위험배율이 46.8% 더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이상의 경우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했으나($p < .05$), 경향성을 보면 고등학교 학력에 비하여 별거·이혼 위험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증가하는 기존의 선행연구(Kalmijn et al., 2004)는 지지하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국내의 선행연구(김태현·전길양, 2002; 임은혜, 2003; Lee, 2005; Chang and Lee, 2006)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5〉 비례적 위험회귀모형 분석결과

변수	B	S.E.	Wald	Exp(B)
<u>인구사회학적 특성</u>				
남편 연령	-0.1907	0.0322	35.1507***	0.826
아내 연령	-0.2168	0.0348	38.7342***	0.805
남편 학력(기준: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0.2060	0.2946	0.4819	0.814
대학 이상	0.4480	0.2529	3.1390	1.565
아내 학력(기준: 고등학교)				
중학교 이하	-0.6309	0.3064	4.2403*	0.532
대학 이상	0.0032	0.3168	0.0001	1.003
남편 취업형태(기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0.0765	0.2557	0.0896	1.080
미취업자	-0.4371	0.3163	1.9111	0.646
부인 취업형태(기준: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0.3861	0.3254	1.4073	1.471
미취업자	-0.0926	0.2869	0.1043	0.912
남편 월 평균소득	-0.0044	0.0017	6.2897*	0.996
부인 월 평균소득	-0.0014	0.0022	0.4091	0.999
<u>심리적 특성</u>				
남편 생활만족도	-0.1619	0.1862	0.7562	0.850
부인 생활만족도	-0.1184	0.1679	0.4966	0.888
<u>가구구성 특성</u>				
부모 동거여부(기준: 동거안함)	0.6556	0.3022	4.7057*	1.926
미성년 자녀여부(기준: 없음)	-0.2193	0.2721	0.6492	0.803
<u>가구 경제적 특성</u>				
자가주택유무(기준: 없음)	-0.2205	0.2054	1.1531	0.802
연간 가구소득	-0.0004	0.0002	4.2573*	1.000
가구 부채	-0.00004	0.00004	1.2334	1.000
가구 경제상태	0.0645	0.0838	0.5935	1.067
-2 Log Likelihood	682.0086***			
df	20			

* : $p < .05$, ** : $p < .01$, *** : $p < .001$

남편과 아내의 월평균 개인소득과 관련해서는 아내의 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p < .05$), 남편의 소득이 높을수록 별거·이혼 위험배율이 낮아지는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이는 South(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경제적 상태가 결혼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남편과 아내의 취업형태와 심리적 특성인 생활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가구 구성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녀 유무와 별거·이혼율이 관계가 있다는 일부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결혼지속기간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고($p < .05$), 부모와 동거하는지 여부가 별거·이혼 위험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5$). 즉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별거·이혼 위험배율이 1.926배 더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동거부모가 있음으로 인한 특성이 결혼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가구의 경제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연간 가구소득 이외에는 자가주택유무, 부채, 주관적 경제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연간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부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연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별거·이혼 위험배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p < .05$). 이는 가구소득과 결혼안정성과의 정적 관계를 지지한 조은영(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별거·이혼에 대한 추이와 결혼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의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남편과 아내의 연령이 낮을수록 별거·이혼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전에는 한번 결혼하면 평생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당연시해왔고 또 이혼으로 인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가능한 이혼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비록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완화되어 이전처럼 반드시 참고 살아야 하는 책임감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최근의 젊은 부부들이 이전과 같이 부부간의 불화가 발생했을 때 서로 인내하고 이해하는 측면보다 이전보다 쉽게 이혼하는 것으로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현실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의 이혼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결혼 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이혼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아내의 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에 비하여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별거·이혼을 할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났으며,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아닐지라도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별거·이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평등적인 관계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Heaton(2002)의 연구결과와 상치되었는데 우리나라 가구 내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양성평등적 가치에 대한 시각이 높고 남성의 경우는 과거의 남성중심적 문화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평등 교육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남편의 월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을 할 확률이 더 낮아졌으며, 유사하게 연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별거·이혼을 할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부부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부부보다 오히려 결혼을 지속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인 측면의 충족 여부가 결혼생활의 지속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최근 한부모가정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한명의 부모가 생계와 자녀양육을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양부모가정보다 빈곤으로 빠지기가 더 쉬울 뿐 아니라 원래 소득이 낮은 부부가 별거·이혼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 된 경우 더 빈곤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위한 지원방안도 사후적으로 중요한 과제이지만 별거·이혼이 발생하기 전에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문제를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저소득의 문제는 결혼안정성, 아동발달, 노인빈곤 등 다양한 사회 계층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저소득보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가구 내 기초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별거·이혼을 할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부양 가구의 부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아내의 경우 사회경제적 활동이 이전보다 활발해져 전통적으로 가족 울타리에서 요구받던 각종 돌봄 역할에 대하여 부담스러워 하는 반면, 아직 공적부양체계가 갖추어져있지 않아 가족과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기존의 돌봄 역할을 그대로 요구하게 되어 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부모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돌봄 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어 치매 등을 앓는 중증노인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들 외에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요구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기를 바란다. 먼저, 결혼지속기간을 산출함에 있어 노동패널의 조사기간 이전에 결혼하여 그 이전에 이혼한 사람들을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혼지속 기간이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출생코호트별 분석 결과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젊은 세대가 과거 세대에 비해 이혼율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영향 정도가 과도하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한계로 밝혀둔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 중에서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이혼을 경험한 사람의 특성변수를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하지 못한 점이다. 시불변변수(time-invariant variables)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시변변수(time-varying variables)의 경우는 측정 시점의 차이로 인해 그 효과가 연령의 효과와 혼재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정될 문제일 것으로 생각되나 연구의 한계로 밝혀 결과의 해석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미숙·김명자. 1990. “도시 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8(1): 171-183.
- 김세현·이성희. 1989. “도시 주부의 결혼 불안정성에 관한 일연구”. 『생활문화연구』 3: 211-229.
- 김연옥. 2001. “실직가정의 가정해체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9-33.
- 김은경. 1998. “결혼 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과정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41-52.
- 김영희. 1999.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 이론적 모델의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37(6): 77-95.
- 김은정·백혜정. 2007. “이혼으로 인한 ‘가족상실’, ‘경제소득’ 및 ‘양육행동’의 변화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3): 79-103.
- 김태현·전길양. 2002. “노년기 부부의 결혼특성요인과 결혼 안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97-206.
- 변화순·김혜영·윤홍식·한지숙. 2006. 『이혼 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현송. 2008. “이혼의 경제적 충격의 추정”. 『가족과 문화』 20(1): 161-185.
- 임선영·김태현. 2002. “노년기부부 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 『한국노년학』 21(3): 111-128.
- 임은혜. 2003.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기여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전신현. 2007. “이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남녀차이”. 『보건과 사회과학』 20: 5-27.
- 정은희. 2004. “원가족분화, 자아존중감과 부부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결혼안정성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가정문화·소비자학과 석사학위 논문.
- 조은영. 2003.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천혜정·최혜경·강인. 2006.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법의 차이와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1): 179-202.
- 최연실·옥선화. 198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결혼 안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83-97.
- 통계청. 2008. “2007년 이혼통계결과”. 2008. 04. 보도자료.
- 현경자. 2005. “결혼의 질과 안정을 저해하는 부부갈등 영역: 성별에 따른 유사점과 차이점”.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1: 158-193.
- _____. 2007. “기혼자의 자기해석 통합유형과 결혼안정: 결혼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6(2): 137-160.
- 현은민. 2007. “경제적 스트레스와 결혼불안정성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45-58.
- Andersen, J. D. 2005. “Financial Problems and Divorce: D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trengthen the Relationship?”.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3(1/2): 149-161.
- Chang, Y. H. and K. Y. LEE. 2006. “Household Debt and Marital Instability: Evidence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4): 675-691.
- De Graaf, P. M. and M. Kalmijn. 2006. “Change and Stability in the Social Determinants of Divorce: A Comparison of Marriage Cohorts in the Netherland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2(5):

516-572.

- Heaton, T. B. 2002. "Factors Contributing to Increasing Marital S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23(3): 392-409.
- Kalmijn, M., P. M. De Graaf, and A. R. Poortman. 2004. "Interactions between Cultur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Divorce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75-89.
- Lee, Y. J. 2005.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Marital Disruption: The Cases of Divorce or Separation". the 2005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Labor Income Panel Study.
- Poortman, A. R. 2005. "Women's Work and Divorce: A Matter of Anticipations? A Research Note".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3): 301-309.
- Poortman, A. R. and M. Kalmijn. 2002. "Women's Labour Market Position and Divorce in the Netherlands: Evaluating Economic Interpretations of the Work Effect".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8: 175-202.
- South, S. J. 2001. "Time-Dependent Effects of Wives' Employment Marital Diss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 226-245.
- Teachman, J. D. 2002. "Stability Across Cohorts in Divorce Risk Factors". *Demography* 39: 331-352.

The Factors Affecting the Marital Duration

Hong, Baeg-Eui

(Ewha Womans University)

Park, Eun-Joo

(Ewha Womans University)

Park, Hyun-Jung

(Ewha Womans University)

Bahk, J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and causes of the marital duration. Data used for this study are ten waves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in 1998~2007, in which the final sample consists of 2,397 households. The Life-table method is used for describing the overall patterns of marital duration by birth-cohorts and different education groups, and the Cox proportional hazard regression model is used to identify significant factors on the marital duration.

The results show that among the all respondents, the 0.79% has divorced or separated within five years after marriage, 2.12% within 10 years, and 5.84% within 20 year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Cox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marital duration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birth-cohorts of respondents and their spouses, education level, earning of spouses, co-residence with parents, and household income. This implies that the hazard rate of marital disruption is higher for younger cohorts, individuals with lower education and economic status, persons living with parents-in-law,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Thu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social welfare policies applicable for these persons.

Key words: Marital Duration, Panel Study, Life-table method, Cox regression

[논문 접수일 : 09. 07. 03 심사일: 09. 07. 20 게재 확정일 : 09. 08. 05]